

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

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창윤 위원입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67호

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먼저 본 조례안의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 목적에 대해 설명
드리겠습니다.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이 2013년 이후 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접근
및 이용보장 그리고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법률 조항을 개
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.

- 이러한 동법 개정의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는 ‘장애인, 고령자’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

하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국가정보화기본조례는 동법이 이와 같은 이유로 2013년 이후 세 차례 이상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 상위법인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32조와 「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.

다음으로는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은 제43조(연차보고 등)제1항 및 제2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또한 현행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조례」는 제5조에서 정보화기본 계획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, 제6조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, 제7조에서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실태조사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
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.

따라서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은 제32조의2(웹접근성 품질인증 등)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장애인·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품질인증(웹접근성 품질인증)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반영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호(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)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집행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
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